

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

소관부서 : 인재개발원 [시행일 : 2018-08-09]

(제정) 2010-03-16 예규 제 1호
(일부개정) 2011-04-05 예규 제 2호
(일부개정) 2011-04-07 예규 제 3호
(일부개정) 2012-01-12 예규 제 4호
(전부개정) 2014-05-01 예규 제 207호
(일부개정) 2018-08-09 예규 제 222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이라 한다)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8.9.>

제2조(적용범위) 사이버교육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 “사이버교육과정”이란 전체교육시간의 60% 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.
- 2 “집합교육과정”이란 사이버교육이 없거나 사이버교육이 전체교육시간의 60%미만인 과정을 말한다.
- 3 “혼합교육과정”이란 일부 교과목에 사이버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과정을 말한다.
- 4 “코스웨어”란 사이버교육 학습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등으로 제작하여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.

제4조(운영방향) 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적합한 코스웨어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발하고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직무교육과정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집합교육과

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교육 과목은 매년 수립·시행하는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다.

③ 독립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은 매년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사이버교육과정 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한다.

⑤ 사이버교육 기간은 수강신청기간, 승인기간, 학습기간, 교육수료처리 기간 등으로 구분하고, 과정별 학습기간은 학습 분량(차시)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·운영한다.

⑥ 사이버 교육대상은 경상남도 및 시·군 공무원으로 한다.

⑦ 사이버교육의 교육훈련경비는 코스웨어의 개발·관리, 강사수당, 문제 출제 및 평가 수당 등에 사용된 경비로 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.

⑧ 민간위탁 교육과정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계획을 별도 수립·시행 한다.

제5조(교육생 등록) ① 사이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(<http://gsnd.nhi.go.kr>)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, 수강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. <개정 2018.8.9.>

② 삭제 <2018.8.9.>

③ 교육생이 소속된 기관의 교육담당자는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중 해당 기관의 공무원 여부를 확인한 후 1차 승인처리를 한다.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④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담당자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.

⑤ 수강신청기간 중이거나 승인완료 전에는 신청한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학습기간이 시작된 경우에는 학습기간 내에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습관리)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

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.

② 삭제 <2018.8.9.>

③ 과정별 학습 기간은 30일로 한다. <개정 2018.8.9.>

④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교과목별 담당강사를 선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⑤ 과정운영자는 전화, E-Mail, SMS(문자메시지) 등을 이용하여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.

⑥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 또는 대리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감점 조치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관리)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목표,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평가, 과제물 평가, 온라인 시험으로 구성한다.

② 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 진도율로 평가한다.

③ 교육생의 학습이해도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시험 또는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다.

제8조(이수관리) ① 사이버교육과정은 운영계획 수립 시 정한 이수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로 인정하되, 학습진도율 미만자, 시험 평가 미응시자, 시험 평가 점수미달자, 과제물 미제출자, 학습시간 미달자 등은 제외한다.

②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 당 1시간을 인정(소수점 이하 반올림)하되, 학습분량, 교육과정의 특성,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이수기준을 만족해야 수료로 인정하되, 집합교육의 일부과목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합교육 계획에 의한다.

④ 정당한 사유없이 사이버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사이버교육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과정별 교육수료 후 수료결과를 10일 이내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통보하며, 수료증 교부는 수료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요원) ① 사이버교육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수립·시행

2.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·관리

3. 사이버교육센터 관리·운영

② 과정(과목)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강승인, 학습관리, 평가관리, 이수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
2. 사이버교육센터의 공지사항, 자료실, 질의답변 등 관리
3. 교육생 지원 및 교육생의 원활한 학습지도 등

제10조(준용규정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재개발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8.9.>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